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강용석 소유물건
(2025타경2033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법보좌관 조성주

감정평가서번호: 럭키1-250430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럭키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및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이 득 주

| | | | | | | |
|----------------------------|---------------------------------|-------------|------------|-------------------------|-------------|------------|
| 감정평가액 | 구천팔백이십칠만이천구백사십원정(₩98,272,940.-) | | | | | |
| 의뢰인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법보좌관 조성주 | | 감정평가 목적 | 법원경매 | | |
| 제출처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경매1계 |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 소유자 (대상업체명) | 강용석 (2025타경20330) | | 감정평가 조건 | - | | |
| 목록표시 근거 |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기준시점 | 조사기간 | 작성일 | |
| 기타 참고사항 | - | | 2025.05.02 | 2025.04.30 ~ 2025.05.02 | 2025.05.05 | |
| 감 정 평 가 내 용 | 공부(公簿)(의뢰) | | 사 정 | | 감 정 평 가 액 | |
| | 종 류 | 면적(㎡) 또는 수량 | 종 류 | 면적(㎡) 또는 수량 | 단 가 | 금 액 |
| | 토지 | 149 | 토지 | 149 | 307,000 | 45,743,000 |
| | 건물 | 68.09 | 건물 | 68.09 | 466,000 | 31,729,940 |
| | 제시외 | (93.1) | 제시외 | 93.1 | - | 20,800,000 |
| 합 계 | | | | | ₩98,272,940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 | | | | |
| " 별 지 참 조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대상 물건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소재 "임천우체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주상용건물로서, 본건 주위는 노변을 연하여 각종상가 등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서, 경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목적의 감정평가건임.

2. 대상 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

가. 대상 물건의 기본적 사항

1) 토지(공시된 개별지가)

| 기호 | 소재지 | 지번 | 면적 (㎡) | 지목 |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도로 교통 | 형상 지세 |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 |
|----|------------------|----|--------|----|-------|-------|--------|---------|--------------------|
| 1 |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 93 | 149 | 대 | 주상용 | 계획 관리 | 세로 (가) | 부정형 평 지 | 114,800 |

2) 건물

| 구분 | 구 조 | 용 도 | 연면적 (㎡) | 지상 /지하 | 사용승인일 | 관련 지번 |
|-----|-----------------|------------|---------|--------|------------|-------|
| 2-1 |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 주택 겸 대중음식점 | 68.09 | 1/0 | 1991.07.29 | |

나.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사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 보호조례>,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주위 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소재 "임천우체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주상용건물로서, 본건 주위는 노변을 연하여 각종상가 등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 보통시됨.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 [2025.05.02]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대상 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 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본건의 경우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경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없 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방법

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및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 등이 있음.

나. 원가방식이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다. 비교방식이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 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라. 수익방식이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마.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2.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적용 규정

가. 본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함.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감정평가방식을, 제12조에서는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조정을 규정하고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본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등을 적용함.

3. 대상 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가. 토 지

본 평가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다른 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본건 지상에 "사진용지"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하는 바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사정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받는 경우의 가격을 "토지건물감정명세표"의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나. 건 물

비교방식에 의한 거래사례비교법의 경우, 유사한 사례의 선택, 토지와 건물이 일괄 거래되는 시장현실에서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배분문제 등으로 정확한 건물가액의 추출이 어렵고, 수익환원법의 경우 토지와 건물에 각각 귀속된 수익가치의 산출이 난해하고,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추정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건 건물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찰가가를 적용한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의 현장 방문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폐문되지 않은 상태로 내부를 조사할 수 있었으며, 임대여부는 미상임.

4. 일괄 · 구분 · 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토지가액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1) 인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2025. 01. 01)

| 기호 | 소재지 | 지번 | 면적 (㎡) | 지목 |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도로 교통 | 형상 지세 | 공시지가 (원/㎡) |
|----|------------------|------|--------|----|-------|-------|-------|--------|------------|
| A |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 62-3 | 201 | 대 | 주상용 | 계획 관리 | 소로 각지 | 세장형 평지 | 137,400 |

2) 비교표준지 선정 및 그 사유

본건은 인근에 소재하며, 물적상황이 유사한 상기 표준지 기호(A)를 본 감정평가에 적용하였음.

나. 시점수정

1) 시점수정의 근거

시점수정은 공시지가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 중 대상 토지와 시·군·구가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음.

2) 미고시 추정

2025.04.01 ~ 2025.05.02 의 지가변동률은 기준시점일 현재 미고시된 상태이므로 2025년 03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지가변동률 산정

| 지가변동률(%) | 계 산 식 |
|---------------------------------|--|
| 1.00222 충청남도 부여군 (계획관리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25.01.01~25.05.02) (계획관리) 2025.01.01 ~ 2025.03.31 : 0.163 2025.03.01 ~ 2025.03.31 : 0.057 $(1 + 0.00163) * (1 + 0.00057 * 32/31) \doteq 1.00222$ |

다.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가 속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1.000)

라. 개별요인 비교

본건 평가 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 간 개별요인 비교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요인 비교치는 각 조건별로 세분하여 비교한 후 격차율을 산정하였음

격차율 산정

| 기호 | | 비 교 항 목 | | | | | | 격차율 | 개별요인 비교 |
|-----|-----|---------|-------|-------|-------|--------|-------|-------|--|
| 본 건 | 사 례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 |
| 1 | A | 0.90 | 1.00 | 1.00 | 0.95 | 1.00 | 1.00 | 0.855 | 본건은 (세로(가), 부정형, 평지)로서 비교표준지 기호(A)(소로각지, 세장형, 평지) 대비 도로의 폭 등 가로조건 열세하고, 형상 등 획지조건 열세함. |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5호,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의 감정평가선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 구 분 | 용도지역 | 주위환경 | 표준적이용 | 도로조건 | 지가수준 (원/㎡) |
|-------|--------|--------|-------|-------|----------------|
| 본건 인근 | 계획관리지역 | 노변상가지대 | 주상용 | 세로(가) | 300,000 내·외 |

3) 인근지역의 평가선례

| 기호 | 소재지 | 지목 |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가로 조건 | 기준 시점 | 해당년도 개별지가 (원/㎡) | 목적 | 면적 (㎡) | 선례단가 (원/㎡) |
|----|----------------------|----|----------|----------|----------|-----------------|-----------------------|----|-----------|---------------|
| 가 |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105-* | 대 | 주상용 | 계획 관리 | 소로 한면 | 2023. 06. 12 | 318,900 | 담보 | 121 | 285,000 |

4) 인근지역 기간별 낙찰가율 통계

(자료: 인포케어)

| 구 분 기 간 | 용 도 | 충청남도 부여군 | | 비 고 (낙찰건수) |
|-----------------------------|------|----------|-----------|---------------|
| | | 낙찰가율(%) | 낙찰율 평균(%) | |
| 1년간 평균 (2024.05~2025.04) | 토지/대 | 58.0 | 29.2 | (7건) |

5)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결정

① 선례(사례)선정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한 상기 선례(사례)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선례 기호(가)를 선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② 산출산식

$$\begin{aligned} \text{그 밖의 요인 보정률} &= \frac{\text{선례(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가격}}{\text{표준지공시지가 가격}} \\ &= \frac{\text{선례(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 \times \text{개별요인비교}}{\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end{aligned}$$

③ 그 밖의 요인 보정률 산정

| 구분 | 단가 (원/㎡)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산출가격 (원/㎡) | 보정률 [선례(사례)기준 /공시지가기준] | 적용 범위 |
|-----------------|-------------|---------|----------|----------|---------------|------------------------------|-----------|
| 평가선례 (기호 가) | 285,000 | 1.00911 | 1.000 | 1.25 | 359,495 | 2.611 | 기호 (1) |
| 비교표준지 (기호 A) | 137,400 | 1.00222 | / | / | 137,705 | | |

※선례(사례) 대비 비교표준지 격차율산정

| 표준지 | 사례 | 가로조건 | 접근조건 | 환경조건 | 획지조건 | 행정정조 건 | 기타조건 | 격차율 |
|-----|----|------|------|------|------|-----------|------|------|
| A | 가 | 1.08 | 1.00 | 1.10 | 1.05 | 1.00 | 1.00 | 1.25 |

비교표준지 기호(A)(소로각지, 세장형, 평지)는 평가선례(가)(소로한면, 부정형, 평지) 대비 도로의 폭, 계통 등 가로, 환경조건 우세하고, 형상 등 획지조건 우세함.

| 산정기간 | 지가변동율 | 비고 |
|-------------------------------|---|----|
| 2023.06.12 ~ 2025.05.02 | 충청남도 부여군 (23.06.12~25.05.02) (계획관리) $(1 - 0.00012 * 19/30) * (1 + 0.00019) * (1 + 0.00028) * (1 + 0.00024) * (1 + 0.00029) * (1 + 0.00031) * (1 + 0.00038) * (1 + 0.00525) * (1 + 0.00163) * (1 + 0.00057 * 32/31)$ ≈ 1.00911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④ 그 밖의 요인 보정률 결정

본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평가선례, 거래사례 및 인근지역 기간별 낙찰가율 통계 등 기타 가치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을 아래와 같이 증액 보정함.

| 표준지 | 평가선례 | 시산 보정률 | 적용 보정률 | 적용범위 |
|-----|------|--------|--------|-------|
| A | 가 | 2.611 | 2.61 | 기호(1) |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 기호 | 표준지 기호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그 밖의 요인 | 산출가액 (원/㎡) | 토지단가 (원/㎡) |
|----|--------|------------|---------|-------|-------|---------|------------|----------------|
| 1 | A | 137,400 | 1.00222 | 1.000 | 0.855 | 2.61 | 307,296 | 307,000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평가개요

토지는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기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나. 거래사례의 선정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 기호(ㄱ)을 선정함.

| 기호 | 소재지 | 지목 |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가로 조건 | 기준 시점 | 면적 (㎡) | 추정단가 (원/㎡) | 실거래가액 (원) |
|----|-------------------|----|-------|-------|--------|-------------|--------|------------|------------|
| ㄱ |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366-* | 대 | 단독 주택 | 계획 관리 | 세로 (불) | 2023. 08.22 | 373 | 187,667 | 70,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사정보정

| | |
|---------------|--|
| 결정의견 | 사정보정이란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액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
| 사정보정요인 | 1.000 |

라. 시점수정

| 적용범위 | 지가변동률(%) |
|-------|---|
| 기호(ㄱ) | 충청남도 부여군 (23.08.22~25.05.02) (계획관리) 2023.08.01 ~ 2023.08.31 : 0.028 2023.09.01 ~ 2023.09.30 : 0.024 2023.10.01 ~ 2023.10.31 : 0.029 2023.11.01 ~ 2023.11.30 : 0.031 2023.12.01 ~ 2023.12.31 : 0.038 2024.01.01 ~ 2024.12.31 : 0.525 2025.01.01 ~ 2025.03.31 : 0.163 2025.03.01 ~ 2025.03.31 : 0.057 $(1 + 0.00028 * 10/31) * (1 + 0.00024) * (1 + 0.00029) * (1 + 0.00031) * (1 + 0.00038) * (1 + 0.00525) * (1 + 0.00163) * (1 + 0.00057 * 32/31)$ ≈ 1.00880 |

마. 지역요인 비교

거래사례가 속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개별요인 비교

| 기호 | | 비 교 항 목 | | | | | | 격차율 | 개별요인 비교 |
|-----|-----|---------|-------|-------|-------|---------|-------|-------|--|
| 본 건 | 사 례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 적 조건 | 기타 조건 | | |
| 1 | ㄱ | 1.08 | 1.10 | 1.10 | 1.25 | 1.00 | 1.00 | 1.634 | 본건은(세로(가), 부정형, 평지, 주상용)로 거래 사례 기호(ㄱ)(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단독주택) 대비 가로의 계통성, 주위환경등 가로, 접근 환경조건 우세하고, 이용도, 경사도 등 획지조건 우세함 |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 기호 | | 사례단가 (원/㎡) | 사정 보정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산정단가 (원/㎡) | 결정단가 (원/㎡) |
|----|----|------------|-------|---------|-------|-------|------------|------------|
| 본건 | 사례 | | | | | | | |
| 1 | ㄱ | 187,667 | 1.000 | 1.00880 | 1.00 | 1.634 | 309,346 | 309,000 |

3.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試算價額) 검토

| 기호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 비교가액 의견 |
|----|-----------------------|-----------------------|-------------------------|
| 1 | 307,000 | 309,000 |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어 합리성이 인정됨. |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동 규칙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4.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결과,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주된 평가방법 | 다른 평가방법 | 기 호 | 토지가액 결정단가(원/㎡) |
|---------|---------|-----|----------------|
| 공시지가기준법 | 거래사례비교법 | 1 | 307,000 |

V. 건물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 방법

건물은 당해 물건의 특성에 적합한 정액법을 기준으로 기준시점일 현재의 재조달원가에서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등을 참작하고, 관리상태 및 현상, 유지수선의 정도 및 장래이용 가능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수정으로 대상 물건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대상 물건의 거래사례나, 수익사례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이 곤란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2. 건축물재조달원가자료집에 의한 유사건물의 분류 및 선정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행 2024년 건축물재조달원가자료집)

| 분류번호 | 구 조 | 용 도 | 등 급 | 표준단가 (원/㎡) | 내용년수 |
|-------------|---------|---------|-----|------------|----------------|
| 03-01-02-09 | 벽돌조/평지붕 | 점포 및 상가 | 3 | 1,326,000 | 45 (40~ 50) |

3. 재조달원가의 결정

건물신축단가표와 본건 건물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표준단가를 선정하여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정도, 기능적·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되, 내·외부 기자재, 바닥재 및 인테리어 등 시공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기호 | 적용층 | 이용상황 | 표준단가(원/㎡) | 비고 |
|----|-----|---------------|-----------|--------------------|
| 2 | 1층 | 주택 겸 대중음식점 | 1,400,000 | 1991.07.29.(사용승인일) |

4. 건물단가 산정

상기에 예시된 ‘건물 신축단가’ 를 참고로 하되 본건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사용자재 및 시공상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에 적용할 표준단가를 결정하고 이에 부대설비 단가(보정단가)를 가산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한 후 경제적 내용년수, 경과년수 등을 감안하여 건물단가(원/㎡)를 산정하였음.

| 기호 | 적용층 | 적용 표준단가 (원/㎡) | 보정단가 (원/㎡) | 재조달원가 (원/㎡) | 잔존 내용년수 | 경제적 내용년수 | 건물단가 (원/㎡) |
|----|-----|------------------|---------------|----------------|------------|-------------|---------------|
| 2 | 1층 | 1,400,000 | 건물에 포함평가 | 1,400,000 | 15 | 45 | 466,000 |

3. 재조달원가의 결정

건물신축단가표와 본건 건물과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표준단가를 선정하여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정도, 기능적·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되, 내·외부 기자재, 바닥재 및 인테리어 등 시공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음.

| 기호 | 적용층 | 이용상황 | 표준단가(원/㎡) | 비고 |
|----|-----|---------------|-----------|--------------------------------------|
| 2 | 1층 | 주택 겸 대중음식점 | 1,400,000 | $1,400,000 \times 15 / 45 = 466,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I.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액

| 기호 | 소재지 | 면적(㎡) | | 단가(원/㎡) | 감정평가액(원) |
|------------|-----------------------|--------|-------|---------|--------------------|
| | | 공부 | 사정 | | |
| 1 |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93(토지) | 149 | 149 | 307,000 | 45,743,000 |
| 2 |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93(건물) | 68.09 | 68.09 | 466,000 | 31,729,940 |
| | 제시외 | (93.1) | 93.1 | - | 20,800,000 |
| 합 계 | | | | | ₩98,272,940 |

2. 결정 의견

상기 감정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액으로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 정 평 가 액 |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단 가 | 금 액 | |
| 1 |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 93 | 대 | 계획관리지역 | 149 | 149 | 307,000 | 45,743,000 | 소유권행사에 제한단가 @215,000/㎡ |
| 2 | 동소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107-5 | 93 | 주택 겸 대중음식점 |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 68.09 | 68.09 | 466,000 | 31,729,940 | 1,400,000 x 15/45 |
| 소 계 | | | | | | | | ₩77,472,940 | |
| ㉠ | [제시외건물] 동소 | 93 | 식당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 (28.5) | 28.5 | - | 12,800,000 | |
| ㉡ | 동소 | 93 | 창고 |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 (10) | 10 | - | 2,500,000 | |
| ㉢ | 동소 | 93 | 화장실 |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 (12.6) | 12.6 | - | 3,500,000 | |
| ㉣ | 동소 | 93 | 차양 | 스레트 및 썬라이트 | (42) | 42 | - | 2,000,000 | |
| 소 계 | | | | | | | | ₩20,800,000 | |
| 합 계 | | | | | | | | ₩98,272,940.- | |
| | | | | 이 | 하 | 여 | 백 | |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소재 "임천우체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주상용 건물로서 본건 주위는 노변을 연하여 각종상가 등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은 노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 공도에 시내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편은 양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로 주상용(상호명:용궁반점:현재는 영업중지상태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노폭 약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참조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별무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본건의 현장 방문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폐문되지 않은 상태로 내부를 조사할 수 있었으며, 임대여부는 미상임.

본건 지상에 "사진용지"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바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사정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받는 경우의 가격을 "토지건물 감정명세표"의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4) 부합물 및 종물 | (2) 이용상태 (5) 공부와의 차이 | (3) 설비내역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건물의 구조

본건 건물은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
(사용승인일:1991.07.29)
외벽: 세멘몰탈후 페인팅 마감 등 및 판넬마감
내벽: 벽지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목재 및 유리

(2) 이용상태

주상용(상호:용궁반점이며 현재 영업중지 상태임.)

(3) 설비내역

온수보일러에의한 난방,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4) 부합물 및 종물

"건물개항도" 및 "사진용지"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이나, 대대적보수공사로 슬래브지붕위 함석지붕을 보강함.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4) 부합물 및 종물 | (2) 이용상태 (5) 공부와의 차이 | (3) 설비내역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본건 지상에 "사진용지"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바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사정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받는 경우의 가격을 "토지건물 감정명세표"의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광역위치도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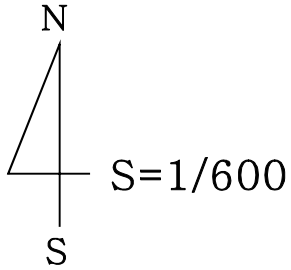
상세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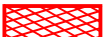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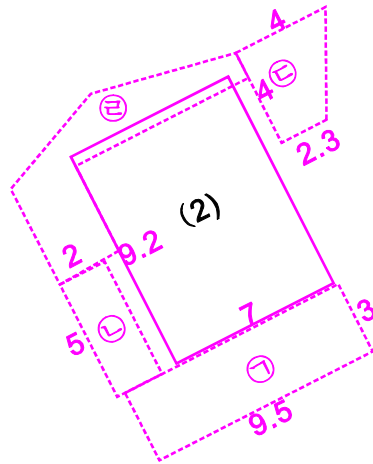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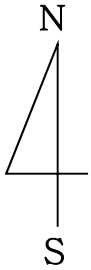


지 적 개 황 도



| | | | | | | |
|-----|---|-----------|---|----------|---|-----------------------|
| 범 례 |  | 평가대상토지 |  | 용도지역구분선 |  | 평가건물3층이상 |
| |  | 도 로 선 |  | 평가건물 1 층 |  | 부합물 및 종물 제 시 외 건 물 |
| |  | 계 획 도 로 선 |  | 평가건물 2 층 | | |

건물개황도



(2): 시멘트벽돌조슬래브지붕단층, 주택겸대중음식점 (공부: 68.09㎡)
 $7 \times 9.2 = 64.4 \text{㎡}$

제시외건물 면적산출근거

-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식당 약 28.5㎡
- ㉡: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약 10㎡
- ㉢: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약 12.6㎡
- ㉣: 스투트 및 썬라이트 차양 약 42㎡

| | | | | | | |
|----|---|--------|---|---------|---|-----------|
| 범례 |  | 평가대상토지 |  | 용도지역구분선 |  | 평가건물 3층이상 |
| |  | 도로선 |  | 평가건물 1층 |  | 부합물 및 종물 |
| |  | 계획도로선 |  | 평가건물 2층 | | 제시외 건물 |

사 진 용 지



본건 건물의 외관(제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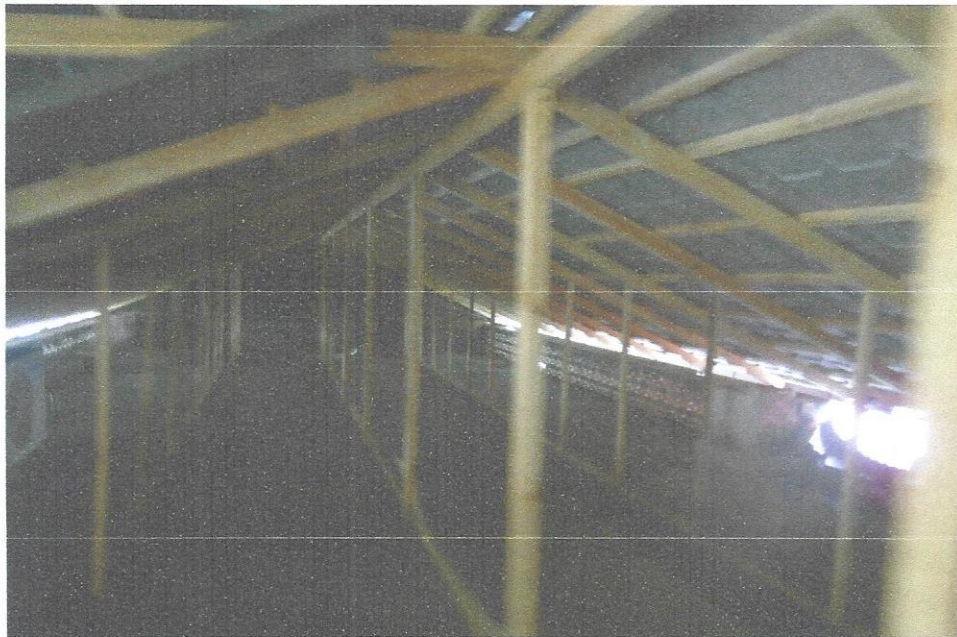


본건 건물의 외관(제시외 ㉠)

사 진 용 지



도로명주소 명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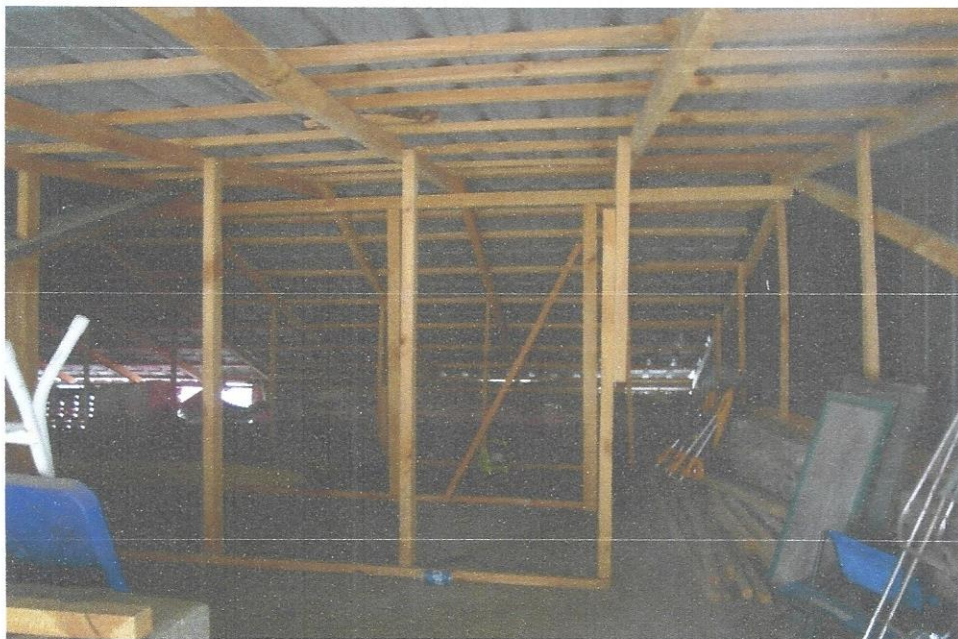


천정

사 진 용 지



천정



천정

사 진 용 지



제시외 ㉞ 참고



차양

사 진 용 지



제시외 ㉠창고 및 차양



제시외 ㉠화장실

사 진 용 지



본건 제시외 ㉠부분의 내면 촬영



본건 제시외 ㉠부분의 내면 촬영

사 진 용 지



본건 건물외관(제시외㉠부분)



본건 건물외관(제시외㉠부분)